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06 발의연월일: 2021. 7. 14.

발 의 자 : 홍익표·김민기·문진석

민형배 · 송재호 · 윤영찬

이워욱 • 임종성 • 임호선

정필모 · 한준호 · 홍성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격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.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이루어져 버스정류장, 공원, 보건지소 등 약 1만 개소에 신규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 바 있음.

그러나 공공와이파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관한 감독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, 그 속 도나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능력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시 · 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 · 변경하려는 경우에는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신고한 바와 다르게 운용될 경우 그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64조 등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확인"을 "확인(시·도지사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말한다)"으로 한다.

다만, 시·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65조의 제목 중 "제한"을 "제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"운용하여서는"을 "운용하거나 제64조제1항에 따라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여서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7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·도시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지사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시·도지사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"로 한다.

제98조제4호 중 "운용한"을 "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다르게 운용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제64조제 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)	제64조(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)
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	①
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	
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	
관할하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	
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	
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	
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
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	
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u><단서</u>	<u>다만, 시·도</u>
<u>신설></u>	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
	치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 사항
	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
	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
	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
	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	3
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	
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	
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	

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65조(목적 외 사용의 <u>제한</u>)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<u>운용하여서는</u>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· 2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 <신 설>

확인(시·도지사의 경우에
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
확인을 말한다)
④ (현행과 같음)
세65조(목적 외 사용의 <u>제한 등</u>)
①
<u>운용하거나</u>
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
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
<u> 여서는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

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7조(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이 대한 시정명령 등) ① 시· 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의 설치, 변경 및 운용(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는 제외한다)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② <u>시·도지사</u>는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• 2. (생략)

③ 시·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

제67조(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
에 대한 시정명령 등) ① <u>과학</u>
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
도지사
<u>.</u>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
<u>는 시·도지사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
<u>는 시·도지사</u>

사용정지 또는 개조·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9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 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 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한 자

5. ~ 7. (생략)

 제98조(벌칙)
1. ~ 3. (현행과 같음) 4
<u>은</u>
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
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
5. ~ 7. (현행과 같음)